

초빙교원등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19.11.27. 개정 2022.11.02. 개정 2023.09.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하여 임용하는 초빙교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초빙교원 등이라 함은 교육, 학생지도, 연구,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서 본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용된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 (자격)

- ① 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거나 특정 전문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 경력이 풍부한 자
 2. 외국인이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
 3. 기타 본교 교육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 등은 초빙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초빙교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조건을 충족한 자
2. 석좌교수: 국내·외 저명한 석학 또는 사회적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자
3. 객원교수: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외국인 학자, 국내 타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의 학자로 특별한 교육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용된 자
4. 연구전담교수: 연구만 전담하는 교수<개정 2023.09.21.>
5. 교환교수: 본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본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자
6. 특임교수: 학교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7. 타 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 등은 그에 적합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채용)

- ① 초빙교원 등의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이하 “공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이하 “특채”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공채가 불가능한 교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학기 중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
3. 산업체 경력(교육기관 포함) 10년 이상인 자인 경우
- ② 총장은 해당 학과로부터 채용분야 신청을 받아 본교의 운영방침, 학과의 사정, 해당 교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채 및 특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채용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 자 중 학과(계열)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채용한다.<개정2022.11.02>
- ④ 초빙교원 등의 재임용 시 최근 1년간 강의평가 결과 평균 70점 미달 시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제6조 (채용공고)

초빙교원 등의 채용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채는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 (제출서류)

- ① 초빙교원 등의 신규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지원서 1부.
 2.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및 수상경력 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연구실적물(연구·강의전담교수에 한함) 각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삭제 2022.11.02.>
- ②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에 관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임용)

- ① 총장은 최종합격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임용동의를 거쳐 재단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하며, 임용예정자 중 학기 시작일 전까지 임용포기 또는 임용취소사유가 발생 시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임용예정자 중 학력, 경력 등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9조 (임용기간)

- ① 초빙교원 등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초빙교원의 재계약 심사는 교무처장과 학과(계열)장이 하며, [별표1]교무처장, [별표2]학과(계열)장의 평정표에 의해 심사평정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11.02>

③ 임용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제10조 (복무)

- ① 초빙교원 등은 교육관계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초빙교원 등은 임용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시작 2월 전까지 교육혁신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우)

초빙교원 등의 보수 또는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강의 및 책임시간)

- ① 초빙교수는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주당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 ② 초빙교수를 제외한 기타 비전임교원은 직무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초빙교원 임용규정 및 연구·강의전담 초빙교수 임용규정은 2020년 02월 29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1.02.>

초빙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

심사일	. . .
심사위원	(인)

○ 항목별 평점기준(100점 만점)

인적사항	소속학과	
	성명	

구분	평정항목	평정내용(방법)	평정기준	배점	점수
1	강의평가	강의평가 평균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점이상 (30점) · 80점~89점 (20점) · 70점~79점 (10점) 	30	
2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교육관계 및 기타법령준수	· 본교 제규정 위반 등 형사상의 물의를	10	
		학내활동	· 학내행사 및 교육 무단 불참 (회당)	10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성희롱 물의 · 학내 및 대외 음해성 투서	20	
		교원으로서의 자질			30
계				100	

※ 평점이 70점 이상이라도 평정 항목 중 평점항목별 점수가 1/2이하인 경우 재계약 제청이 제외됨.

[별표 2] <개정 2022.11.02.>

초빙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

심사일	. . .
심사위원	(인)

○ 항목별 평점기준(100점 만점)

인적사항	소속학과	
	성명	

구분	평정항목	평정내용(방법)	평정기준	배점	점수
1	수업과 학생에 대한 생활 및 지도	수업결손	· 면학분위기 훼손 (10점)	30	
		학생지도 활동	· 학생 상담 및 취업연계(20점)	20	
		교원으로서의 자질		50	
계				100	

※ 평점이 70점 이상이라도 평정 항목 중 평점항목별 점수가 1/2이하인 경우 재계약 제청이 제외 됨.